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인·허가·보급 등 국가정책 사업 및 지역현안 수요 대응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618명 → 636명(증18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607명 → 625명(증18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3)

1) 본청 총계 : 300명 → 318명 (증18명)

가) 일반직 : 295명 → 311명(증16명)

- 6급이하 : 279명 → 295명(증16명)

나) 연구직 : 3명 → 5명(증2명)

- 연구사 : 3명 → 5명(증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별첨 1

나. 예산조치 : 기준 인건비 반영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2) 입법예고(2019. 10. 24.~2019. 11. 4.) 결과, 이상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성별영향평가 분석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5) 비용추계서, 별첨 3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18명이며”를 “636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7명”을 “625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36	318	11	96	43	168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02	311	11	69	43	168
4급	1	1				
4~5급	4	2		1		1
5급	28	13	3		3	9
6급 상당이하 소계	565	295	8	67	37	158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 계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7	5		2		
연 구 관						
연 구 사	7	5		2		
지도직 계	25			25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2			22		

[별첨 1]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 (정원의 총수) 성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07명
2. (생 략)

[별표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관련)

지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계	618	300	11	96	43	168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계	586	295	11	69	43	168
4급	1	1				
4~5급	4	2		1		1
5급	28	13	3		3	9
6급 상당이하 소계	549	279	8	67	37	158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계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계	5	3		2		
연 구 관						
연 구 사	5	3		2		
지도직계	25			25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2			22		

개 정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 636명이며 ----------.

1. ---------- 625명
2. (현행과 같음)

[별표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관련)

지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계	636	318	11	96	43	168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계	602	311	11	69	43	168
4급	1	1				
4~5급	4	2		1		1
5급	28	13	3		3	9
6급 상당이하 소계	565	295	8	67	37	158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계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계	7	5		2		
연 구 관						
연 구 사	7	5		2		
지도직계	25			25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2			22		